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2년 06월 01일

신촌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하 *호	하 *호 1980-10-29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(대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5-10
장 *화	장 *화 1998-05-03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1길 (대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5-10
한 *민	한 *민 1974-01-28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(대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5-10